| | |
|---|---|
| 의안번호 | 2217207 |
| 의 뢰 인 | 엄태영 의원 |
| 회 답 일 | 2026.03.30. |
| 추계번호 | 26E1214 |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 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1조 1,382억원, 2030년 1,552억원 등 2027~2030년 4년간 총 3조 8,073억원(연평균 9,518억원)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

○ 교통·에너지·환경세: 4년간 1조 9,655억원(연평균 4,914억원) 감소

○ 개별소비세: 4년간 636억원(연평균 159억원) 감소

○ 교육세: 4년간 3,044억원(연평균 761억원) 감소

○ 자동차세: 4년간 5,110억원(연평균 1,278억원) 감소

○ 부가가치세(국세): 4년간 7,192억원(연평균 1,798억원) 감소

○ 지방소비세: 4년간 2,436억원(연평균 609억원) 감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, 자동차세,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| |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누적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3년 연장 (안 제106조의2제1항) | | −11,382 | −12,729 | −12,410 | −1,552 | −38,073 | −9,518 |
| −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| | −6,155 | −6,564 | −6,403 | −532 | −19,655 | −4,914 |
| − 개별소비세 | | −202 | −213 | −205 | −17 | −636 | −159 |
| − 교육세 | | −954 | −1,016 | −991 | −82 | −3,044 | −761 |
| − 자동차세(지방세) | | −1,600 | −1,707 | −1,665 | −138 | −5,110 | −1,278 |
| − 부가가치세 | 국세(74.7%) | −1,845 | −2,413 | −2,350 | −584 | −7,192 | −1,798 |
| | 지방소비세(25.3%) | −625 | −817 | −796 | −198 | −2,436 | −609 |

주: 징수 기준

# Ⅱ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106조의2제1항(농업 · 임업 ·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| ○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3년 연장<br>– (현행) 2026년 12월 31일<br>–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 | – |

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106조의2제1항(농업 · 임업 ·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| ○ | –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농 · 임 ·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는 감면대상 석유류 공급량 추정치에 감면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

○ 최근 휘발유 · 경유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었던 점을 반영하여[1], 추계에는 조세지출 실적 대신 면세유 공급량의 증감률 추세를 활용

1) 최근 유류세 인하: ('18.11.6.~'19.5.6.) 15% 인하 → ('19.5.7.~8.31.) 7% 인하 → ('21.11.12.~'22.4.30.) 20% 인하 → ('22.5.1.~6.30.) 30% 인하 → ('22.7.1.~12.31.) 37% 인하 → ('23.1.1.~'24.6.30.) 경유 37%, 휘발유 25% 인하 → ('24.7.1.~10.31.) 경유 30%, 휘발유 20% 인하 → ('24.11.1.~'25.4.30.) 경유 23%, 휘발유 15% 인하 → ('25.5.1.~10.31.) 경유 15%, 휘발유 10% 인하 → ('25.11.1.~'26.3.26.) 경유 10%, 휘발유 7% 인하 → ('26.3.27.~5.31.) 경유 25%, 휘발유 15% 인하

[표 2]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실적: 2019~2025년

(단위: 억원)

| 세목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2025(전망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| 7,547 | 7,997 | 7,421 | 5,019 | 4,692 | 4,973 | 4,599 |
| 개별소비세 | 289 | 289 | 376 | 276 | 239 | 232 | 271 |
| 교육세 | 1,175 | 1,243 | 1,169 | 794 | 739 | 780 | 886 |
| 부가가치세 | 2,892 | 2,565 | 2,893 | 3,654 | 3,132 | 2,969 | 4,090 |
| 전체 | 11,903 | 12,094 | 11,859 | 9,743 | 8,802 | 8,954 | 9,846 |

자료: 기획재정부,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

❑ 추계 자료가 발생 기준임을 감안해, 징수 기준으로 공제·환급액을 조정

○ 매년 징수 기간(부가가치세: 분기, 그 외 세목: 월)별로 공제·환급액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

❑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계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 가. 추계방법

❑ 농·임·어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유종별로 2020~2025년 실적에 대한 연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정

[표 3] 농·임·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: 2020~2025년

(단위: 천kl, %)

| 유종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 연평균 증감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휘발유 | 202 | 201 | 194 | 189 | 191 | 190 | −1.2 |
| 경유 | 1,855 | 1,767 | 1,667 | 1,663 | 1,626 | 1,621 | −2.7 |
| 중유 | 43 | 38 | 34 | 21 | 21 | 23 | −11.7 |
| 윤활유 | 8 | 8 | 7 | 7 | 7 | 7 | −3.4 |
| LPG | 15 | 17 | 19 | 18 | 19 | 21 | 7.6 |
| 등유 | 443 | 440 | 423 | 350 | 341 | 365 | −3.8 |
| 합계 | 2,567 | 2,472 | 2,344 | 2,248 | 2,205 | 2,228 | −2.8 |

주: 중유 공급량은 부생유 2호(개별소비세율 동일)를 포함함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산림청,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간접세는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, 자동차세(주행분),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합산

○ 추계기간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유류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전제

[표 4] 현행 유종별 세율

| 유종 |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(A) | 개별소비세 (B) | 교육세 (C) | 자동차세(주행분) (D) | 부가가치세 (E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휘발유 | 529원/L[1] | – | A×15% | A×26% | (세전가격 +제세부담금 +품질검사수수료[3]) ×10% |
| 경유 | 375원/L[1] | – | | | |
| 등유 | – | 63원/L[1] | B×15% | – | |
| 중유 | – | 17원/L | | – | |
| 윤활유 | – | –[2] | – | – | |
| LPG | – | 14원/kg[1] | – | – | |

주: 1) 경유와 휘발유의 기본세율은 각각 340원/L, 475원/L이지만 탄력세율 375원/L, 529원/L를 반영하고, 등유의 기본세율은 90원/L이지만 탄력세율 63원/L를 반영하며, LPG의 기본세율은 20원/kg이지만, 탄력세율 원/L를 반영함
2) 윤활유의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해당
3) 품질검사수수료는 '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'에 명시되어 있으며 석유제품은 0.469원/L

❑ 부가가치세 추계 시,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의 세전가격은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반영

○ 석유류의 유종별 세전가격은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워[2] 최근 실적인 2020~2025년 연평균 금액을 적용

[표 5] 유종별 세전가격 현황: 2020~2025년

(단위: 원/L)

| 유종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휘발유 | 397 | 638 | 980 | 837 | 816 | 763 | 739 |
| 경유 | 432 | 655 | 1186 | 951 | 900 | 866 | 832 |
| 중유 | 451 | 606 | 895 | 786 | 816 | 772 | 721 |
| LPG | 588 | 803 | 1119 | 947 | 971 | 990 | 903 |
| 등유 | 411 | 599 | 1022 | 917 | 870 | 841 | 777 |

자료: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(www.petronet.co.kr)

2) 두바이유 가격(달러/배럴): ('18년) 69.66 ('19년) 63.53 ('20년) 42.29 ('21년) 69.41 ('22년) 96.41 ('23년) 82.10 ('24년) 79.58 ('25년) 69.36 ('26년3.1~26.) 129.41

## 나. 추계결과

### (1)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

❑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의 공급량은 2025년 유종별 실적에 최근 연평균 증가율(2020~2025년, 비용추계 전제 참고)을 반영하여 추정

[표 6]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의 유종별 공급량 추정: 2026~2029년

(단위: 천kl)

| 유종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
|---|---|---|---|---|
| 휘발유 | 188 | 185 | 183 | 181 |
| 경유 | 1,578 | 1,536 | 1,495 | 1,455 |
| 중유 | 21 | 18 | 16 | 14 |
| 윤활유 | 7 | 7 | 6 | 6 |
| LPG | 23 | 25 | 27 | 29 |
| 등유 | 352 | 338 | 326 | 313 |

❑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유종별 공급량 추정치에 각각의 세율 적용하여 추계

○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 = 휘발유 및 경유 공급량 추정치 × 세율(휘발유 529원/L, 경유 375원/L) × 조정계수*

○ 개별소비세액 = 등유, 중유, LPG 사용량 추계 × 세율(등유 63원/L, 중유 17원/L, LPG 14원/kg) × 조정계수*

* 면세유 공급 시점과 감면액 발생 시점 간 차이 등을 보정하기 위해,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를 산출해 반영(2020년 기준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0.996, 개별소비세 1.002)

[표 7]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계(귀속)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| | 2027 | 2028 | 2029 |
|---|---|---|---|
|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| 6,715 | 6,550 | 6,390 |
| 개별소비세 | 220 | 212 | 204 |

(2) 교육세 및 자동차세

❑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와 자동차세(주행분)은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가세(Surtax)이므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추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추계

○ 교육세액 = (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추계액 + 개별소비세 추계액) × 15%

○ 자동차세액(주행분) =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추계액 × 26%

[표 8]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 교육세와 자동차세(주행분) 감면액 추계(귀속)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| | 2027 | 2028 | 2029 |
|---|---|---|---|
| 교육세 | 1,040 | 1,014 | 989 |
| 자동차세(주행분) | 1,746 | 1,703 | 1,661 |

(3) 부가가치세

❑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%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계

○ 부가가치세액 = 유종별 공급가액 추정액[3] × 10% × 조정계수*

- 휘발유, 경유 공급가액 = (세전가격+교통·에너지·환경세+교육세+자동차세 주행분+품질검사수수료)×유종별 사용량 추계
- 등유, 중유 공급가액 = (세전가격+개별소비세+교육세+품질검사수수료)×유종별 사용량 추계
- LPG(프로판) 공급가액 = (세전가격+개별소비세+품질검사수수료)×사용량 추계

* 실제 부가가치세 감면액과 추계액 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(2020년 기준, 1.22) 적용

[표 9]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계(귀속)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| | 2027 | 2028 | 2029 |
|---|---|---|---|
| 부가가치세 | 3,294 | 3,208 | 3,126 |

3)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,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(조정계수)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

(4) 추계 결과

❑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,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1,382억원 등 2027~2030년 4년간 총 3조 8,073억원(연평균 9,518억원) 감소 예상

○ 추계에 활용한 석유류 공급량이 간접세 신고 기준 자료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

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 및 자동차세는 매월 공급량에 대한 석유 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달 공제 및 환급되므로 당해연도 11/12, 차년도에 1/12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
-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/4, 차년도에 1/4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

[표 10] 농·임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(징수): 2027~2030년

(단위: 억원)

| |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누적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| | -6,155 | -6,564 | -6,403 | -532 | -19,655 | -4,914 |
| - 개별소비세 | | -202 | -213 | -205 | -17 | -636 | -159 |
| - 교육세 | | -954 | -1,016 | -991 | -82 | -3,044 | -761 |
| - 자동차세(지방세) | | -1,600 | -1,707 | -1,665 | -138 | -5,110 | -1,278 |
| - 부가가치세 | 국세(74.7%) | -1,845 | -2,413 | -2,350 | -584 | -7,192 | -1,798 |
| | 지방소비세(25.3%) | -625 | -817 | -796 | -198 | -2,436 | -609 |
| 전체 | | -11,382 | -12,729 | -12,410 | -1,552 | -38,073 | -9,518 |

# 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# Ⅴ. 작성자

❑ 성명
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|
|---|---|---|
| 세제분석1과 | 김효경 | 박연서 |

❑ 대표연락처

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주소 |
|---|---|---|
| 김효경 | 02-6788-4647 | hkkim@assembly.go.kr |